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필요

3. 주요내용

가. 하수도 관련 규정 삭제(제명, 제1조 개정 등)

공사는 상수도, 공단은 하수도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관련 규정 삭제 필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그”를 “그”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수도시설관리권”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수도시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등록부”를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로 한다.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수도시설관리권 및</u> <u>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u>	<u>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 및 <u>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과 그</u>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그</u> ----- ----- ----- -----.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u>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u> (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가등록) ----- <u>수도시설관리권</u> -----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7141